

1. 의결주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 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기획재정부 15명(5급 15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7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3. 8. 16.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8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4명”을 “64명”으로,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을 “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서기관 69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9”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1”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1”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서기관 69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9”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1”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1”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일반직 계 3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 다음에 “서

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2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직급 상향 조정한 15명(행정사무관 14명,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연국기록관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5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변인) ① (생 략)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③ (생 략)	제4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
제5조(감사관) ① (생 략)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③ (생 략)	제5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④ (생 략)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정책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⑥ ~ ⑨ (생 략)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7조(인사과)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예산실) ① ~ ⑦ (생략)

⑧ 예산실에 예산총괄과·예산정책과·예산기준과·기금운용계획과·예산관리과·고용예산과·교육예산과·문화예산과·기후환경예산과·총사업비관리과·국토교통예산과·산업중소벤처예산과·농림해양예산과·연구개발예산과·정보통신예산과·복지예산과·연금보건의료예산과·지역예산과·안전예산과·법사예산과·행정예산과·국방예산과 및 방위사업예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⑨ ~ ③① (생략)

제11조(세제실) ① ~ ⑦ (생략)

⑧ 세제실에 조세정책과 · 조세
특례제도과 · 조세분석과 · 소득
세제과 · 법인세제과 · 금융세제

과 · 재산세제과 · 부가가치세제과 · 환경에너지세제과 · 국제조세제도과 · 관세제도과 · 산업관세과 · 관세협력과 및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⑨ ~ ⑫ (생략)

제12조(경제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 · 경제분석과 · 자금시장과 · 물가정책과 · 정책기획과 및 거시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⑩ (생략)

제13조(정책조정국) ① ~ ③ (생략)

④ 정책조정국에 정책조정총괄과 · 산업경제과 · 신성장정책과 · 서비스경제과 · 지역경제정책과 및 기업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⑩ (생략)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경제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정책조정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① (생략)

② 경제구조개혁국에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인력정책과, 노동시장경제과, 복지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① (생략)

② 미래전략국에 미래전략과·인구경제과·지속가능경제과 및 기후대응전략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14조(국고국) ① ~ ③ (생략)

④ 국고국에 국고과·국유재산정책과·계약정책과·국채과·국유재산조정과 및 출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국고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⑤ ~ ⑩ (생 략) 제15조(재정정책국) ① ~ ③ (생 략) ④ 재정정책국에 재정정책총괄과 · 재정건전성과 · 재정분석과 · 재정제도과 · 재정정책협력과 및 재정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재정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⑤ ~ ⑩ (생 략)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① ~ ③ (생 략) ④ 재정관리국에 재정관리총괄과 · 재정성과평가과 · 타당성심사과 · 민간투자정책과 및 회계결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⑤ ~ ⑨ (생 략) 제16조(공공정책국) ① ~ ③ (생 략) ④ 공공정책국에 공공정책총괄과 · 공공제도기획과 · 재무경영과 · 평가분석과 · 인재경영과 · 윤리경영과 · 공공혁신과 및 경영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u>부</u>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공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부</u>

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
관으로 보한다.

⑤ ~ ⑫ (생략)

제17조(국제금융국) ① ~ ③ (생략)

④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외환제도과·금융
협력과 및 다자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
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⑨ (생략)

제18조(대외경제국) ① (생략)

② 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
과·국제경제과·통상정책과·
통상조정과·경제협력기획과
및 남북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
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⑨ (생략)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 (생략)

② 개발금융국에 개발금융총괄
과·국제기구과·개발전략과·
개발사업과 및 녹색기후기획과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제금융국)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부이사관·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서기관----.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대외경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

-----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① (생략)

② 사무처에 복권총괄과·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10퍼센트-----

-----.

② -----
----- 64명----- 4명,
4급 10명-----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민생경제정책관, 재정성과심의관 및 국유재산심의관을 말한다.

② 삭제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기업환경과장, 국유재산조정과장, 재정정보과장, 재정정책협력과장, 외환제도과장, 금융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5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26조(공공조달정책과) ① 공공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25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
-----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공공조달정책과) ① ----

조달정책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② (생략)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9</u>	+9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9</u>	<u><삭 제></u>	-9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 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21</u>	+21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21</u>	<u><삭 제></u>	-21
·	·	·	
·	·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9</u>	+9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9</u>	<u><삭 제></u>	-9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 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21</u>	+21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21</u>	<u><삭 제></u>	-21
·	·	·	
·	·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기획재정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9</u>	+9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9</u>	<u><삭 제></u>	-9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 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21</u>	+21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21</u>	<u><삭 제></u>	-21
·	·	·	
·	·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9</u>	+9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9</u>	<u><삭 제></u>	-9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 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21</u>	+21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21</u>	<u><삭 제></u>	-21
·	·	·	
·	·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기획재정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